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5
------------	-------

발의연월일 : 2017. 12. 27.  
발 의 자 : 위성곤 · 신창현 · 이찬열  
윤영일 · 이학영 · 황주홍  
홍문표 · 김현권 · 정재호  
변재일 · 이수혁 · 송기현  
유승희 · 심기준 · 송옥주  
이용득 · 박영선 · 강병원  
홍영표 · 강창일 · 오영훈  
김상희 · 심재권 · 이원욱  
소병훈 · 기동민 · 김두관  
설 훈 의원(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효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427조, 427조의2, 427조의3 및 43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28조 제1항, 제29조”로 한다.

제427조의2 및 제4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를 “도지사의”로 한다.

օ)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  
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  
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  
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  
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 구역 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p>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p> <p>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u>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u></p> <p>② · ③ (생략)</p>	<p><u>제3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u></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 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p> <p>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p> <p>① ----- ----- --<u>도지사의</u>-- ② · ③ (현행과 같음)</p>
--	---